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SCI평가정보㈜

2. 조치일 : 2025. 2. 14.

3. 조치내용

대 상	내 용
기 관	개선사항 2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기술신용평가 근거 확인 절차 미흡

「기술금융 가이드라인」 제24조 제2항 및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대상 기업의 기술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서류에 대한 상세 목록을 자체 규정에 마련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함에도

회사는 평가대상의 기술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에 대한 상세목록을 자체 규정에 마련하지 않고,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기업으로 피평가업체를 평가*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현장 실사 보고서 또는 전화 상담 등 면담 결과에만 근거하여 평가한 건이 다수 존재하며, 이중 피평가업체에서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었다.

* 피평가업체가 「기술금융 가이드라인」 제16조 제2항 제13호에 따른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술기업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자(기술사·기사·기능장에 한정)를 보유해야 함

<조치할 사항>

따라서, 기술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서류 목록을 마련하여 자체 규정에 반영하고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하는 등 기술력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.

(2) 기술신용평가 결과정보 정확성 관리 미흡

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「기술신용정보관리규약」제7조 제2항에 따라 기술신용정보의 등록 또는 정정·삭제 사유 발생 시 전산매체 등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함에도

신용정보원에 기술신용정보를 전문 형태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오류*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기술신용정보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.

* 경영진 수, 근무경력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에 대해 실제와 다른 값을 전송한 경우

<조치할 사항>

따라서, 등록되는 기술신용정보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정보 전문 생성부터 등록까지 전문 발송 업무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, 오류 확인 시 전문을 즉시 재전송하는 등 기술신용정보 등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.